제 3 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단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1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공단의 구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봉사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9%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6%,9%)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 1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3. 표준 장기요양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 으로 책임이 있다.

③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①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 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제한다.
② 대상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제한다.
③ 대상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제한다.

제 16 조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